

### 3. 공연장상주단체 지원

- 사업내용**
- 공연장상주단체 지원
  - 지역상주단체 지원
- 지원규모**
- 상주단체 당 평균 7천2백만원 지원  
(공연장 당 상주단체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)

- 신청자격**
- 공연예술단체
    - 연극(아동극, 뮤지컬 포함)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분야 등의 공연예술단체
    -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공연예술단체
      - ※ 경기도 지역단체 및 공연장 소재 시군 지역단체 우대
      - ※ 공연장에서 상주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
  - 공연장
    -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(민간 공연장 배제)
    - 상주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를 운영하는 공연장

- 세부 지원방향**
- 공연장상주단체 지원
    - 공연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의 상주 및 협력사업 지원
    - 상주단체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과 공연장 가동률 제고

예술단체 역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수작품 창작(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) 개발 노력</li> <li>- 선택 프로그램(역량강화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) 실시</li> <li>-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</li> <li>-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,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(홍보 마케팅 등)</li> <li>-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</li> <li>- 지원금 교부대상으로서 집행 및 정산 총괄</li> </ul>
공연장 역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,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(제공시설 내역 명기)</li> <li>-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</li> <li>-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 (작품 기획 및 제작, 홍보마케팅, 퍼블릭프로그램 운영, 성과관리 등)</li> <li>-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</li> <li>-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(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) 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 (대관료,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)</li> </ul>

※ 공연장상주단체 의무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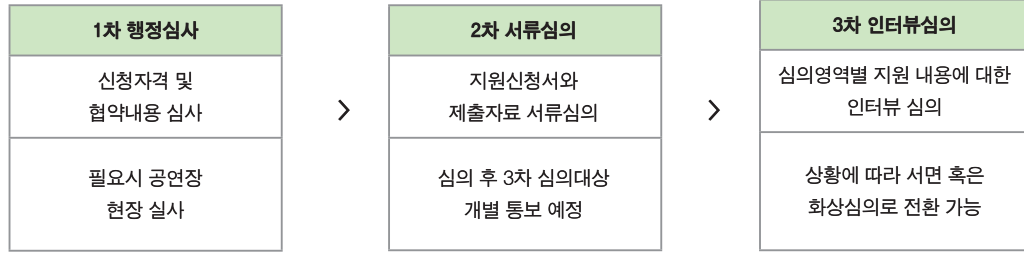
구 분		내 용	비 고
필수	제작초연	신작공연 1건 + 기획공연 1건	택1
	창작개발	신작 제작을 위한 쇼케이스 공연 + 기획공연 2건	
선택	역량강화 프로그램	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(워크숍, 교육 등)	택1
	관객개발 프로그램	교육, 문화나눔 등 다양한 관객 개발 프로그램	
	교류협력 프로그램	공연장상주단체 교류 및 국내외 교류협력 프로그램 (국제교류, 타 단체와 교류 등)	

- 지역상주단체 지원
  - 우수 공연예술단체의 지역 공연장(2개 이상) 협력사업 지원
  -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우수 작품 제작, 발표를 촉진 및 지역주민에게 우수 공연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
    - ※ 지역상주단체 의무사항 : 공연장상주단체와 동일한 필수-선택프로그램을 도내 공연장 2곳 이상에서 나누어 수행

- 지원금 집행범위
  - 상주단체 프로그램(필수, 선택프로그램) 경비
  -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지원금의 30% 이내 집행가능
  - 상주공연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중 20% 범위 내에서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(프로그램 운영, 작품 제작, 홍보·마케팅, 상주공간운영, 사업 운영 인건비 등)로 집행할 수 있음
  - 대표자 사례비는 프로젝트 참여 경비 수준으로 책정 가능

- 공연장 사업비 편성비율 의무화 (필수 사항, 상주단체 연차별 차등 적용)
  - 상주단체 기준 1~2년차(총사업비의 10% 이상)
  - 상주단체 기준 3~4년차(총사업비의 20% 이상)
  - 상주단체 기준 5년차(총사업비의 30% 이상)
  - 상주단체 기준 6년차(총사업비의 40% 이상)
  - 상주단체 기준 7년차 이상(총사업비의 50% 이상)
  - ※ 상주단체는 총사업비의 10%를 자부담으로 편성할 것을 권장합니다.

## 심의방식



※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단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심의기준

### ○ 예술단체 역량과 운영계획

- 최근 3년간 창작활동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, 예술적 완성도
- 예술단체의 중단기 발전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
- 공연장 환경에 대한 예술단체의 적합도 및 지역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노력

### ○ 공연장 역량과 운영계획

- 상주단체 제공 가능 공간(공연장, 사무실, 연습실), 기획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실적 등
- 상주단체 사업 전담인력(기획·마케팅·홍보 인력) 역량, 마케팅 역량
- 상주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활동 계획 마련 여부 및 공연장 매칭 예산 비율

### ○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

- 상주 프로그램(공연, 관객개발 등) 내용의 충실도와 완성도, 기획의 참신성
-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지향점과 중점적인 협력 방향성(신작개발 등)
- 예산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

## 지원신청 방법

### ○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(ncas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시 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
- ※ 우편,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- ※ 문의 : NCAS 고객만족센터 1577-8751
- ※ 2022년도 공연장상주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
## 필수 제출자료

### ○ 지원신청서

- 1) 사업계획서
- 2) 단체 활동 실적자료  
(팸플릿, 보도자료, 포스터 등)
- 3) 상주단체 운영계획(예술단체 작성)
- 4)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(대표자)

### 공연장관련 준비사항

- 5) 공연장 등록증
- 6) 협약서(계약서, 양해각서 등)  
※ 지역상주는 공연장 협력사업 확인문서(공문, 협약서, 계약서 등)를 제출
- 7) 상주단체 운영계획 (공연장 작성)

### ○ 작성 시 확인사항

- 파일명: **공연장상주\_단체명 or 지역상주\_단체명**
-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
-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
-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
- ※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
## 유의사항

- **공연장상주단체 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(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), 경기문화재단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**
-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.
-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이외의 개별적인 심의 탈락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.
-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동일사업으로 문체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지자체,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이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.
- 접수 마감일까지 2021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·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.
- 최종 심의결과로 지원신청액과 결정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
## 문의

-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(031-231-7236)
- 문의시간 : 평일 10시~17시 (점심시간 12시~13시 제외)